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5. ~ 9. 2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20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42호
----------	--------

발의연월일 : 2022. 9. 6.

김미연 의원, 이복남 의원,
서선란 의원, 양동진 의원,

발 의 자 : 이영란 의원, 장경원 의원,
나안수 의원, 정홍준 의원,
김태훈 의원

1. 제정이유

- 시민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을 정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의료 장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안 제4조)
- 다.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안 제6조)
- 라.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발생 시 재정 지원 취소 및 회수(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시설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설치 의무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다.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
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에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사업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지도·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있음
○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홍보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개정일
1	경남 사천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8-11
2	충남 논산	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5-02
3	경북 예천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5-02
4	경기 여주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4-20
5	경기 가평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4-13
6	경상남도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1-27
7	강원 홍천	홍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1
8	충남 당진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0
9	전남 장성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27
10	경남 의령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22
11	전남 함평	함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30
12	전라남도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2021-11-04
13	경북 청도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0-05
14	경기 김포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02
15	충남 태안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5-31
16	경기 수원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5-12
17	충청남도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30
18	강원 속초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02
19	경기도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3-16
20	전남 영암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2-25
21	충남 금산	금산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15
22	경남 남해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08
23	경기 의왕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16
24	전북 김제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2020-10-28
25	경기 안산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07
26	경기 용인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9-29
27	경기 부천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13
28	경남 의령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6-03
29	경기 광명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3-25
30	경기 과천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3-11
31	경기 동두천	동두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3-01
32	전라북도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2-28
33	경기 광주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1-03
34	경기 성남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25
35	강원 철원	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11
36	충북 충주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01
37	충남 서천	서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21
38	경북 영천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2019-09-25
39	강원 춘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10
40	경남 하동	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8-30
41	경기 군포	군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09
42	전남 구례	구례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27

43	충남 보령	보령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20
44	경기 평택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18
45	경기 시흥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5-03
46	경기 구리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4-30
47	전남 완도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4-23
48	충북 옥천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26
49	경북 칠곡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1-06
50	경기 양평	양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7-10
51	경남 밀양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5-25
52	경남 함양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27
53	경기 파주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3-31
54	전남 목포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19
55	충남 계룡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0-20
56	경남 거제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27
57	경상북도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2016-09-19
58	경남 양산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7-18
59	경기 남양주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1-07
60	충북 청주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08
61	충남 아산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7-27
62	경기 안양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4-24
63	경북 울진	울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2-31
64	경남 거창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2-31
65	충북 제천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6-05
66	경기 안성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8-09
67	강원 영월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5-10
68	충청북도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2013-01-04
69	전남 나주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2012-11-20
70	경기 화성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1-15
71	경기 고양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2-30
72	경기 오산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9-30
73	경북 영주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5-10
7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2022-03-31
7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2020-08-07
7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16
7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2019-12-15
7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0
7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2019-01-09
8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7-27
81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8-01
82	부산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15
83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03
84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8-13
85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8-04
8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5

87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09
88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15
89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2020-12-28
90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5-28
91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1
92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18
93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10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10
95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3
96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6
97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2-15
98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7-12
99	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3-30
100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3-01
101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2017-01-05
102	부산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12
103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9-25
104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5-07
105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3-30
106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2-29
107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0-08
108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9-17
109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7-30
110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6-20
111	서울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2013-01-10
112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2012-03-30
113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2-29
114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2-12
115	서울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9-23
116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9-03-10
117	전남 담양	담양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5-11
118	경북 포항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13
119	전북 김제	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3-28
120	강원 원주	원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29
121	전북 남원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11
122	전북 순창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15
123	서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09

124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1-21
125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2
126	대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30
127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29
128	서울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2-18
129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0-15
130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9

※ 전남 9개 지자체(전라남도, 장성, 함평, 영암, 구례, 완도, 목포, 나주, 담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44호
----------	--------

발의연월일 : 2022. 9. 13.

발의자 : 박계수 의원, 장경순 의원,
유승현 의원, 최현아 의원,
김영진 의원, 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1. 제정이유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놀이·학습·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아이 양육 정보 교류 및 보호자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가족품앗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및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설치 및 운영하게 되는 경우, 설치비 전액 및 운영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기 조성 된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유휴 공간 발굴의 어려움은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 수요 조사 시 선정되도록 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 향후 순천시 자체로 신규 설치 시 공공시설 신축 또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250	—	100	50	50	50
세입(a)	—	—	—	—	—	—
세출(b)	250	—	100	50	50	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250	—	100	50	50	50
국 비	25	—	25	—	—	—
도 비	—	—	—	—	—	—
시 비	225	—	75	50	50	5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총 소요액		100	50	50	50	50	300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비	50	—	—	—	—	50
	운영비	50	50	50	50	50	250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할 것
2.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것
4.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커튼류 및 카펫류 등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5.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4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일부 조항이 개정·신설되어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인용 법률을 현행화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 등)가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인용 법률을 현행화 함
 - 제38조 중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를 “제2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로 개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명확화(제8조)
 -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안건” → “100만원 이상인 안건”으로 개정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자” / “구비한 자를” → “사람” / “갖춘 사람을”
 - “초일” → “첫 날”
 - “1회에 한정하여” → “한 차례만”
 - “2회 이상” / “2회째” / “3회째부터” → “두 번” / “두 번째” / “세 번째”
 - “의하지” → “따르지”
 - “기타” → “그 밖의 “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6. ~ 9.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29.(가족보육과-1837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8.1.(기획예산실-1019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16.(순천시 공고 제2022-1858호)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진행”을 “집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외”를 “제1항 외”로,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 관계법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비한 자를”을 “갖춘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을 “100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것인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초일”을 “첫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2회 이상”을 “두 번”으로, “2회째”를 “두 번째”로, “3회째부터”를 “세 번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회”를 “두

번” 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고충” 을 “고충민원” 으로 한다.

제18조 중 “고충민원신청” 을 “고충민원 신청”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조사를” 을 “세무조사를” 로 한다.

제24조 중 “조례 등” 을 “조례” 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을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관계법” 을 “지방세 관계법령”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탈루의” 를 “지방세탈루”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지 않고 타인” 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 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행정” 을 “지방세 행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고 타인” 을 “않고 다른 사람” 으로 한다.

제27조 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를 “부과제척기간 만료” 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초일” 을 “첫 날” 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38조 중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를 “제2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u>진행</u>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5. ----- ----- ----- <u>집행</u> ----- ----- ----- ----- ----- ----- -----.
② <u>제1항외</u> 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u>지방세관계법</u>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② <u>제1항 외</u> ----- ----- ----- ----- ----- ----- ----- <u>지방세 관계법령</u> ----- -----.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생략)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u>자로</u>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② ----- <u>사람으</u> <u>로</u>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 ----- -----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안건

2. (생략)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생략)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

----- 갖춘 사람 -----
----- . -----

1. 2.(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 -----

----- 사람은 -----
----- . -----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100만 원 이상인 -----

2.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
----- .

1. (현행과 같음)

2. -----

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생 략)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
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 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
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
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
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
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
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
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

----- 경우

3. (현행과 같음)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
------(첫
날-----

-----.

② -----

----- 한 차례만

-----.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
리) ① -----

----- 두 번 -----
----- 두 번째 -----
----- 세 번째 -----
-----.

② ----- 두 번 -----

-----.

다.

③ (생 략)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신청의 취하) -----
고충민원-----

-----.
-----.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

----- 고충민원 신청 -----
-----.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 조사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

조례-----

-----.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
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
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
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
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
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
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
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
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
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
조사 하는 행위
3. (생략)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
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생략)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
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
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
로 한다.

② ----- 처분을 위한 절차
가 진행 중이거나 -----

-----.

제26조(요청 대상) ① -----

-----.

1. ----- 지방세 관계법령-----

2. 지방세탈루 -----

3. (현행과 같음)
4. -----
-----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

5.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 행정 -----

-----.

1. (생략)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생략)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 6. (생략)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현장 준수) ① (생략)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1. (현행과 같음)

2. -----

-- 따른 -----

3. (현행과 같음)

4. -----

않고 다른 사람-----

5. --- (현행과 같음)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
----- 부
과제척기간 만료 -----
-----.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
-----(첫 날-----

--. -----

-----.

제30조(납세자권리현장 준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
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
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의 범위) 시장은 영 제51
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
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
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
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그 밖의 -----
-----.

제33조(업무의 범위) -----
----- 제4호까지의 ---

-----.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
-----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사람은 -----
-----.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정]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1.1.1.] [법률 제17651호, 2020.12.22., 제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 12. 29.]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 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제정]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시행 2021.1.1.] [대통령령 제31342호, 2020.12.31., 일부개정]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6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지방세징수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531호(2020.8.12.)

7. 징수유예 규정 합리화 (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등)

가. 제·개정 이유

- ‘납기 시작 전’,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와 같이 시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징수유예 종류가 상이함에도 구분없이 일괄하여 규정하여 과세관청 및 납세자 혼란 야기
- 성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승인여부 통지절차 등 신청 절차 합리화 및 징수유예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시기별 적용 가능한 징수유예의 종류 및 요건을 ‘납기시작 전’과 ‘고지된 후’로 구분하여 명확화(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등)
- 징수유예 신청 시 승인여부 통지절차 및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징수유예 금지규정 신설(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 보완 및 합리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39호(2020.11.4.)

6. 징수유예 절차 체계화(안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가. 제 · 개정 이유

- 징수유예 신청 시 승인여부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등 징수유예 절차를 체계화하여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승인여부 통지절차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

나. 제 · 개정 내용

- 징수유예 신청 시 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신청기한 마련
- 징수유예 승인여부 통지 시 징수유예 대상 세목·세액 및 징수유예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납세자 권리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1호(2021.10.29.)

1. 납세증명서 발급 시 제외되는 징수유예 범위 명확화(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제25조(징수유예 등)가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로 분리

나. 제·개정 내용

- 납세증명서 발급시 체납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징수유예 대상에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규정을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보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00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000과에 둔다.

※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며,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업무만으로 구성된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에 둘 수 있음.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 자치단체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음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전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000금액 이상인 안전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금액을 정함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제2항의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령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군수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시장·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칙조사(조사 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

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시장·군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①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세무부서 의견 및 제5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4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전면 정비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물품관리 공무원의 직무 세분화(안 제3조)
 - 물품관리관(관리), 물품운용관(유지·운용), (분임)물품출납원(출납·보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세분화(안 제4조, 제35조)
 -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위임 세분화
 - 회계연도마다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 조항 신설
- 기증품의 취득 세부절차 규정(안 제11조)
 - 기증품 취득 시 순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의무
- 소모품 가액기준 조정(안 별표1)
 - (현행) 단가 3만원 이하 → (개정) 단가 50만원 미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정비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 ~ 8.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22.(가족보육과-1781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7. 15.(기획예산실-926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순천시 공고 제2022-1775호)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본청 : 회계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 : 각 서무담당과장 및 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장
3. 의회 : 의회사무국장
4. 읍·면·동 : 각 읍·면·동장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종류·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쳐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영 제61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2장 출 납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

작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
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
가격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
능성이 없는 경우와 그 부속물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도내(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가격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매각대금이 남지 않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 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품목이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물품장부상 취득단가가 1천만원 이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 제4항 규정을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시장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규칙이 정하는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체 및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 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

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거쳐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 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

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이어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이어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종류, 상태구분

○ 물품의 종류

-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을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의 그 밖의 구성성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 ③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한 물품
-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육류, 수선용 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일지라도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⑤ 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완성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예 :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등)
- ⑥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 (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분	실	분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 받는 경우
관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리전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류전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용전환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공	차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	상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 관련 법령

구분	조항										
조항 신설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세분화 -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위임 세분화(제4조) - 회계연도마다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 조항 신설(제35조)										
조항 구체화	○ 물품관리 공무원의 직무 세분화(제3조) - 물품관리관(관리), 물품운용관(유자·운용), (분임)물품출납원(출납·보관) ○ 기증품의 취득 세부절차 규정(제11조) - 기증품 취득 시 순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의무										
기준 조정	○ 소모품 가액기준 조정(별표1) - (현 행) 단가 3만원 이하 → (개 정) 단가 50만원 미만										
조문번호 정비	○ 삭제 조항 번호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당초</th><th>변경</th></tr> </thead> <tbody> <tr> <td>제32조</td><td>제31조</td></tr> <tr> <td>제33조</td><td>제32조</td></tr> <tr> <td>제34조</td><td>제33조</td></tr> <tr> <td>제35조</td><td>제34조</td></tr> </tbody> </table>	당초	변경	제32조	제31조	제33조	제32조	제34조	제33조	제35조	제34조
당초	변경										
제32조	제31조										
제33조	제32조										
제34조	제33조										
제35조	제34조										
문구·표현 정비	○ 상위법에 맞춰 용어 정비 - 제8조, 제9조(경리관 → 재무관) - 제10조(일반운영비 → 일상경비) - 제17조(내구연수 → 내용연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순화 - 제2조 외 25개 조항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 관련 법령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관련 법령
제2조(관리책임)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 (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물품직무 세분화(관리·사용·출납) 및 조항 분리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	- 위임사무 구체화 : 불용결정 및 처분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관련 법령
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본청 : 회계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 : 각 서무담당과장 및 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장 3. 의회 : 의회사무국장 4. 읍·면·동 : 각 읍·면·동장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조직 명칭 반영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	- 기증품 취득 절차 구체화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및 수령 관련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관련 법령
전협의 후 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 조례 제11조 개정에 따른 규정 추가 : 제4호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관련 법령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u>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u> 5. 관리전환에 <u>따른</u>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u>제1호부터 제5호까지</u>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u>제1호부터 제5호까지</u>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매각대금이 남지 않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 근거 조항 변경(제27조 → 제78조)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관련 법령
3. 매각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u>제1항에 따라</u>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u>물품 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u> 1. 매각총량 2. <u>품목이 둘 이상</u>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u>결정한다.</u> 다만, 물품장부상 취득단가가 1천만 원 이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 제4항 규정을 따른다. ⑤ <u>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u>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u>시장거래가격에 따라</u>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u>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u>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u>연 2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u>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 효율적 물품관리를 위한 수시 매각 단서 추가(제8항)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관련 법령
제22조(일시보관) ① <u>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u>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u>그 밖의</u>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u>일시보관</u>하게 할 수 있다. ② <u>제1항에 따라</u> 물품을 <u>일시보관</u>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물품운용관의 물품 사용 책임성 제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23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u>물품운용관</u>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관련 법령
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u>거쳐야 한다.</u>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u>분실·훼손</u>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제31조</u>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조문 번호 정비 : 삭제 조항 번호 제외 <당초> <변경> 제32조 → 제31조 제33조 → 제32조 제34조 → 제33조 제35조 → 제34조
<u>제32조</u> (인계의 절차)	
<u>제33조</u> (타직원에 의한 인계)	
<u>제34조</u>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u>제35조</u>(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u>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	-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신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관련 법령
[별표1] 물품의 종류, 상태구분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을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의 <u>그 밖의</u> 구성성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u>50만원 이상의</u> 물품 ③ <u>그 밖의</u> 시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	- 소모품 가액 기준 조정(3만원 이하 → 50만원 미만) - 소모품 기준 추가(파티션 등) 관련 기준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의의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 (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관련 법령
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육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u>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 데 사용되거나</u>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u>건축자재</u> 등) ④ 내용연수가 <u>1년 이상일지라도</u> 취득단가 <u>50만원 미만의</u>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⑤ <u>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완성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 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u> (예 :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등) ⑥ <u>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u>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관련 법령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5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의거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근거법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자치법규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해 획일적·포괄적으로 배제함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1조제5항 “운영기간 3년” 을 “운영기간 5년” 으로 변경
-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 “피한정 후견인 삭제”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 ~ 8.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8. 1.(기획예산실-1015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순천시 공고 제2022-1847호)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을 “피성년후견”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항”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u>피성년후견</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④ (생략)	제2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u>3년</u> 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⑤ ----- ----- <u>5년</u> ----- -----.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u>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u>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 ----- 「 <u>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 ----- -----.
② 시장은 「 <u>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u> 」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 <u>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 제21조----- ----- -----.
③ 시장은 「 <u>순천시 사무의 민간</u>	③ ----- 「 <u>순천시 행정사무의</u>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
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
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
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

-----.

-----.

참고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 6. 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5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의거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근거법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자치법규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해 획일적·포괄적으로 배제함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4조 제1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로 변경
- 제2항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을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으로 변경,
- 제3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로 변경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5조 “센터 장의 임기는 3년” 을 “센터 장의 임기는 5년” 으로 변경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6조 “피한정 후견인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 ~ 8.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8. 1.(기획예산실-1015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순천시 공고 제2022-1846호)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센터운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건강가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 <u>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u> 」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센터운영 등) ① ----- -----. ----- ----- ----- ----- 「 <u>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u>3년</u> 으로 하며 계약만료 2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 <u>5년</u> ----- ----- -----.
④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u>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u> 」를 준용한다.	④ ----- ----- ----- 「 <u>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u> 」-----.
제15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생략)	제15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 장의 임기는 <u>3년</u> 으로 하며, 임기만료 2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센터의 장이 해임될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2월 이내에 새로운 센터의 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 <u>5년</u> ----- ----- -----. ----- ----- -----.

제16조(센터 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센터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해임해야 한다.

1. · 2. (생략)

3.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4. · 5. (생략)

② (생략)

제16조(센터 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피성년후견인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임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2.] [대통령령 제31236호, 2020. 12.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 6. 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정) 2015.12.01 조례 제1583호

(일부개정) 2017.04.21 조례 제1726호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1>

③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에 별표 1에 따른 재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1>

④ 제3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현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65호
----------	--------

발의연월일 : 2022. 9. 13.

최현아 의원, 장경순 의원,
유승현 의원, 박계수 의원,
이복남 의원, 김미연 의원,
이향기 의원, 신정란 의원,
발 의 자 : 이영란 의원, 정홍준 의원,
김영진 의원, 서선란 의원,
양동진 의원, 정광현 의원,
오행숙 의원, 이세은 의원,
장경원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의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 (안 제5조)
- 라.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안 제6조 안 제7조)
- 마.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및 지원제한 (안 제8조 ~ 안 제9조)
-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어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관내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청년농어업인은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어업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경쟁력 있는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생산·유통·가공 지원
5. 농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자체심의 실시 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따라 사업 시행과 지원에 관한 비용 발생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 발생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4조(청년 농어업인 기본지원)에 따라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이를 근거로 시행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그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최 현 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령)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1. 15., 2022. 1. 4.>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사제 <2015. 6. 22.>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75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착한가격업소 지정, 이용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안 제1조)
- 조례 정의(안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지정(안 제4조)
- 제외대상(안 제5조)
- 사후관리(안 제6조)
- 이용 활성화, 지원 등(안 제7조, 안 제8조)
- 영업자의 협조(안 제9조)
-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 및 임무(안 제10조, 안 제11조)

3. 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7. 25. ~ 8. 1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29.(가족보육과-1843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7. 12.(기획예산실-912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6.(순천시 공고 제2022-1884호)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판매품목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시기, 기준 등을 포함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을 매년 공고해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한 업소 중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현지 실사 평가·판단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최종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5조(제외대상)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프랜차이즈 업소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순천시 외로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채용·보수 등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개정(안)

2022. 8.



행 정 안 전 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순 서

I. 목 적	1
II. 지정 대상	1
III. 지정[평가] 기준[안]	1
IV. 지정 절차	4
V. 지정 규모 및 시기 등	5
VI. 사후 관리	6

- < 참고 >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선(안)
2.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심사방법(안)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안)

I 목 적

- (도입배경) '11년에 소비자물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필요
- (추진목적)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II 지정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법인이 운영하는 전국·지역단위 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III 지정(평가) 기준(안)

-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지정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평점 총합이 70점 이상(가점 포함)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되 저가메뉴 비중, 가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정
 - 다만, 관내 착한가격업소 총량은 지자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지정
- ❖ (평균가격 산정기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업소 지정 전에 미리 설정한 후 평균가격을 산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표본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

1 메뉴비중 (20점)

-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20점)
 - (지표정의) 대표메뉴* 중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저가메뉴)가 차지하는 비중

* 대표메뉴는 업소의 전체메뉴 중에서 판매량이 높은 메뉴를 말하며, '판매량이 높은' 기준은 업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설정

- (평가기준) 60% 이상 20점, 50% 이상 15점

※ 평균가격 미만 메뉴(저가메뉴)가 50%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2 가격 (40점)

○ 가격수준(30점)

- (지표정의)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저가메뉴)의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평가기준) 평균가격 20% 미만 30점, 10% 미만 25점, 5% 미만 20점

○ 가격안정 노력(10점)

- (지표정의) 현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유지한 기간
- (평가기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3 이용만족도 (25점)

○ 이용만족도(25점)

- (지표정의) 가격, 메뉴, 서비스 등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다만,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배점 25점을 '메뉴비중', '가격'에 분산하여 반영(메뉴비중 10점, 가격 15점)
- (평가기준)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100점 등 만점 대비 점수를 25점으로 환산)

4 위생·청결 (10점)

※ 위생·청결 배점은 낮으나 관리상태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 주방 등(4점)

- (지표정의) ①바닥의 물기 처리상태, 배수시설의 청결도(2점)
②위생복·위생보 착용도, 칼·도마 등 주방용품 소독 여부(2점)
- (평가기준) ①주방 청결도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 평가
②주방용품 소독 여부에 따라 소독 실시 2점, 소독 미실시 0점

○ 매장 내(3점)

- (지표정의)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 (평가기준) 매장 내 용품 등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 화장실(3점)

- (지표정의) 세척제, 화장지·에어타월 구비여부, 남녀구분, 수세, 소독, 환기 등 관리상태 정도
- ※ 화장실이 매장 단독으로 이용가능한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이 아닌 경우 평가 미실시, '주방 등' 배점에 포함)
- (평가기준) 화장실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5 공공성 [5점]

○ 공공성(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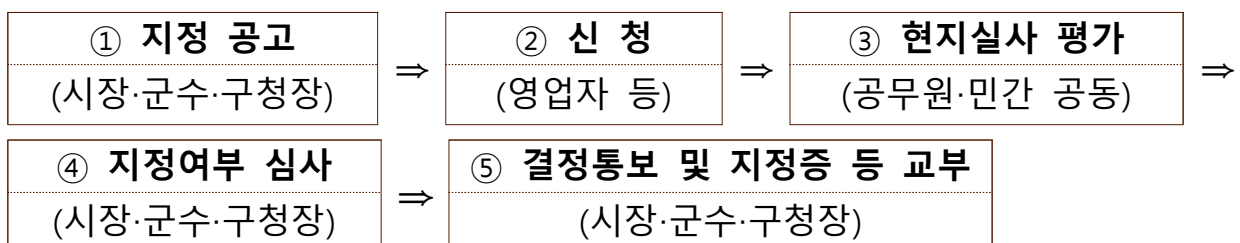
- (지표정의)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각종 시책의 이행여부
- (평가기준)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6 가점 부여 [10점]

○ 가점 부여(10점)

- (지표정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내역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 (평가기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실적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IV 지정 절차



① 지정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② 신청

-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신청 제한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지역 내에서 분점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

③ 현지 실사평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지정기준(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공무원,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

④ 지정여부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실시

⑤ 결정 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경우 결정사항을 신속히 해당 자영업자 등에게 통보하고, 지정증·착한가격업소 표찰을 교부

V

지정 규모 및 시기 등

① 지정 규모

- 착한가격업소 지정규모(업소수)의 적정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양한 업종이 분포될 수 있도록 관리

② 지정 시기 [일제정비기간]

- 연 2회(6월, 12월) 일제정비기간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원칙
 - 다만, 자영업자 등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실정에 따라 수시 지정 가능

③ 재심사 (既 지정업소)

- (정기) 일제정비기간에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 진행
- (수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심사 실시
 - ※ 재심사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VI 사후 관리

① 업소정보 현행화

- 일제정비기간 종료 후 착한가격업소 정비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조치(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정보 일괄 수정)
 - 시·군·구별 홈페이지 등 관련 정보는 자체적으로 조치
- 수시 지정 또는 정비를 실시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정보 수정 조치

② 지정 취소 후 조치사항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참고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선(안)

□ 요식업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100점
메뉴비중 (20점)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20점)	■ 전체 메뉴 중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저가메뉴)'가 차지하는 비중 ※ 평균가격 미만 메뉴가 50%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60% 이상	20점
			50% 이상	15점
가격 (40점)	가격수준 (30점)	■ 저가메뉴(전체메뉴의 50% 이상)의 지역 평균가격 미만 정도 ※ 저가메뉴가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평균가격 미만 20%	30점
			평균가격 미만 10%	25점
			평균가격 미만 5%	20점
	가격안정 노력(10점)	■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이용 만족도 (25점)	이용만족도 (25점)	■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친절도, 품질, 위생 등) ※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 다만,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메뉴비중', '가격'에 배점 반영(메뉴비중 10점, 가격 15점)		25점
위생· 청결 (10점)	주방 등 (4점)	■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2점) ■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2점)		4점
	매장 내 (3점)	■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3점
	화장실 (3점)	■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 화장실 매장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이 아닌 경우 '주방 등' 배점에 포함)		3점
공공성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 (평균가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업소 지정 전에 미리 설정한 후 평균가격을 산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

< 가점 부여 (10점) >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 비요식업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100점
품목비중 (20점)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20점)	■ 전체 품목 중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품목(저가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 평균가격 미만 품목이 50%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60% 이상	20점
			50% 이상	15점
가격 (40점)	가격수준 (30점)	■ 저가품목(전체품목의 50% 이상)의 지역 평균가격 미만 정도 ※ 저가품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평균가격 미만 20%	30점
			평균가격 미만 10%	25점
			평균가격 미만 5%	20점
	가격안정 노력(10점)	■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이용 만족도 (25점)	이용만족도 (25점)	■ 가격, 서비스 등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 ※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 다만,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품목비중·가격기준' 배 점에 반영(품목비중 10점, 가격 15점)	25점	
위생· 청결 (10점)	주영업시설 (7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	7점	
	화장실 (3점)	■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등 ※ 화장실이 업소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시설이 아닌 경우 주영업시설에 포함하여 평가)	3점	
공공성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 (평균가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업소 지정 전에 미리 설정한 후 평균가격을 산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

< 가점 부여 (10점) >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 신규 지정

-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가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 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지역단위에 관계없이 지정 불가
 -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지역단위 프랜차이즈인 경우는 가능

□ 재심사 (既 지정업소)

-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
- (자진취소 등) 자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업소명 변경은 미해당), 휴업*의 경우에는 업소 지정취소 조치
 - * 1개월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가능. 다만, 업주 의견 청취 후 지정 취소여부를 판단
- (행정처분) 업종별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 조치

□ 행정사항

- 착한가격업소 정보관리 철저
 - 업소 신규지정, 지정취소 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 관련 정보를 즉시 현행화
 -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 <http://www.goodprice.go.kr>
-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 인센티브 중단 등 신속 조치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회수, 상하수도료 감면 등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중단 등 신속히 조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선 검토(안)

① 추진배경

-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대해 이용자의 불만족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 착한가격의 취지와 달리 업소의 일부 메뉴만 착한가격으로 운영, 음식 품질·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저조 등으로 부정적 인식 제공 등
- 착한가격업소 운영취지에 부합하고, 업소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② 지침 제·개정 연혁

- '11. 8.16,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제정
 - ※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시기, 사후관리, 지정취소 등 규정
- '13. 4. 3, 위생·청결기준 강화(10→25점),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
- '18. 3.15, 가격기준 완화(60→45점), 품질·서비스 강화(5→20점) 등
- '19. 6.13, 착한가격업소 적용범위 구체화, 지자체 자율성 강화(지정기준 가점 추가(10점), 행안부·시도 협의절차 삭제) 등

③ 지정기준(평가기준) 등 개선방안

□ 지정기준 개선

- 평균가격 미만 메뉴(저가메뉴) 비중 확대
 - 업소의 대표메뉴(판매량이 높은 메뉴) 중에서 저가메뉴가 차지하는 비중 확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식 개선
 - * (현행) 저가메뉴 비중 30% 이상(10점) → (개선) 60% 이상(20점)
 - ※ 평균가격 미만 메뉴가 60%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 업소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가기능 강화
 - 저렴한 가격수준 외에 품질, 서비스, 위생·청결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통한 환류기능 강화

- ※ (현행) 배점 10점(평가방법 미제시) → (개선) 배점 25점(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활용)
 - 업소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없을 경우 동 배점은 다른 평가기준에 반영
- 이용자 만족도 평가점수가 저조할 경우(15점 미만) 타 지표점수가 높더라도 착한가격업소로 미지정 가능

○ 비가격요소 평가비중 축소

- 착한가격업소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가격 위주로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위생·청결 등 비가격요소에 대한 평가비중 축소
 - ※ (현행) 50점(위생·청결 30, 품질서비스 20) → (개선) 10점(위생·청결)
 - 현행 품질서비스 20점 중 이용만족도 10점 차지
 - ※ 비가격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 보완

○ 평균가격 설정기준 구체화

- 지역 평균가격 설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평균가격 설정기준 적용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 ※ (현행)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 고려 산정 → (개선)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업소 지정 전 미리 설정 후 평균가격 산정

○ 업소 지정기준 간소화

- 복잡다단한 세부 평가기준을 착한가격업소 운영 취지에 필요한 요소 위주로 재편성하여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정
 - ※ (현행) 평가지표 11개, 평가기준 22개 → (개선) 평가지표 8개(△3), 평가기준 15개(△7)

□ 기타 개선사항

○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 명확화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내용이 빈번함에 따라 지정대상을 명확히 규정
 - ※ (지정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법인이 운영하는 전국·지역단위 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비요식업 지정기준 추가

- 현 평가기준이 비요식업 평가에 부적절한 지표가 있어 비요식업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지표는 비요식업에 적합하도록 조정

○ 착한가격메뉴 표시

- 업소 메뉴판에 착한가격 메뉴를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이용자의 착한가격메뉴에 대한 인식 편의 제고
- 착한가격업소 차등 지원 근거 마련
 - 착한가격업소별 매출액, 가격동결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이 영세한 업소, 가격을 장기간 동결한 업소에 상하수도료, 물품 등의 지원규모를 차등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횟수 확대(연 1회→연 2회)
 - 착한가격업소의 현행정보 신속제공을 위해 일제정비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한 내용 반영('21년 하반기부터 실시 중)
 - ※ (현행) 1회(상반기, 6월) → 2회(상·하반기 각 1회, 6월·12월)
- 기타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시
 - 지정기준 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설명자료를 추가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4 향후계획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선(안) 의견수렴 : ~8.23.
 - ※ 개정 지정기준 적용 시 착한가격업소 변동현황 제출(서식 참고 5)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선(안) 마련·시행 : 9월 초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개편 추진 : ~10월
 - ※ 업소 검색기능 편의성 제고, 지자체 추천 우수업소 홍보, 만족도 평가기능 반영 등(유지보수업체 비용 부담)

참고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선(안) 비교표

< 요식업 기준 >

분야	현행	개선	비고
메뉴비중		■ 배점(20) - <u>저렴한 가격상품 비중</u>	확대
가격	■ 배점(45) - 가격수준(20) - 가격안정노력(15) - <u>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u>	■ 배점(40) - 가격수준(30) - 가격안정노력(10)	일부 조정
이용만족도		■ 배점(25) - <u>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친절도</u> <u>만족도</u>	확대
위생청결	■ 배점(30) - 주영업시설(20) - 화장실(5) - 건물 등 환경(5)	■ 배점(10) - 주방 등(4) - 매장 내(3) - 화장실(3)	축소
품질서비스	■ 배점(20) - <u>이용만족도(10)</u> - 운영(5, 복장·위생상태 등) - 시설(5, 이용안내문, 표지판 등)	■ 배점 없음 - 이용만족도 별도 분야 구분 - 운영은 위생청결(주방 등)에 통합 - 시설은 폐지	폐지
공공성	■ 배점(5) - 옥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지자체 시책 이행여부	■ 배점(5) - 옥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지자체 시책 이행여부	유지

참고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선(안)

□ 요식업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100점
저가메뉴 비중 (20점)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20점)	■ 대표메뉴 중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저가메뉴)가 차지하는 비중 ※ 평균가격 미만 메뉴가 50%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60% 이상	20점
			50% 이상	15점
가격 (40점)	가격수준 (30점)	■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저가메뉴)가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저가메뉴가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평균가격 20% 미만	30점
			평균가격 10% 미만	25점
			평균가격 5% 미만	20점
	가격안정 노력(10점)	■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이용 만족도 (25점)	이용만족도 (25점)	■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가격, 품질, 친절도, 위생 등) ※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 다만,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메뉴비중', '가격'에 배점 반영(메뉴비중 10점, 가격 15점)		25점
위생·청결 (10점)	주방 등 (4점)	■ 바닥 물기 처리상태, 배수시설 청결도(2점) ■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 등 소독 여부(2점)		4점
	매장 내 (3점)	■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3점
	화장실 (3점)	■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화장지·에어타월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 화장실 매장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이 아닌 경우 평가 미실시, '주방 등' 배점에 포함)		3점
공공성 (5점)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 (평균가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업소 지정 전에 미리 설정한 후 평균가격을 산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

〈가점 부여 (10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 비요식업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100점
품목비중 (20점)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20점)	■ 대표 품목 중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품목(저가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 평균가격 미만 품목이 50%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60% 이상	20점
			50% 이상	15점
가격 (40점)	가격수준 (30점)	■ 저가품목(대표품목의 50% 이상)의 지역 평균가격 미만 정도 ※ 저가품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평균가격 미만 20%	30점
			평균가격 미만 10%	25점
			평균가격 미만 5%	20점
	가격안정 노력(10점)	■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이용 만족도 (25점)	이용만족도 (25점)	■ 가격, 서비스 등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 ※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 다만,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품목비중·가격기준' 배 점에 반영(품목비중 10점, 가격 15점)	25점	
위생· 청결 (10점)	주영업시설 (7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	7점	
	화장실 (3점)	■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등 ※ 화장실이 업소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시설이 아닌 경우 주영업시설에 포함하여 평가)	3점	
공공성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 (평균가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업소 지정 전에 미리 설정한 후 평균가격을 산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

< 가점 부여 (10점) >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 신규 지정

-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가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 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지역단위에 관계없이 지정 불가
 -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지역단위 분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

□ 재심사 (既 지정업소)

-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
- (자진취소 등) 자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업소명 변경은 미해당), 휴업*의 경우에는 업소 지정취소 조치
 - * 1개월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가능. 다만, 업주 의견 청취 후 지정 취소여부를 판단
- (행정처분) 업종별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 조치

□ 행정사항

- 착한가격업소 정보관리 철저
 - 업소 신규지정, 지정취소 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 관련 정보를 즉시 현행화
 -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 <http://www.goodprice.go.kr>
-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 인센티브 중단 등 신속 조치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회수, 상하수도료 감면 등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중단 등 신속히 조치

참고 4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현황 [22.8.12 기준]

□ 131개 지자체 조례 제정 (10개 시도, 121개 시·군·구)

구분	광역시	기초	비고
서울 (25)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 종로구	8
부산 (16)	○	남구,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4
대구 (8)	○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8
인천 (10)		서구	1
광주 (5)	○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5
대전 (5)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5
울산 (5)	○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진군	5
세종	○		-
경기 (31)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하남시, 양평군, 수원시, 오산시	10
강원 (18)	○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춘천시	8
충북 (11)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9
충남 (14)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14
전북 (14)	○	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익산시, 장수군	10
전남 (23)	○	곡성군, 구례군, 목포시, 여수시, 영광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무안군, 담양군, 완도군	11
경북 (23)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포항시, 성주군	6
경남 (18)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17
제주	○		
계	10	121	13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 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 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소상공인,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정책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능력 향상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판로의 확보)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화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의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업종별 지원)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구조고도화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정책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 영역의 보호)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장소·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조세의 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 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자산총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6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7623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5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개정이유

- 순천문화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제명 변경
- 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목적 재규정(안 제1조)
- 재단명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2조)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3조)
- 재단 기본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재단 이사회 구성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무 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제목 변경 및 내용 정비(안 제16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6. ~ 9. 5.) 결과 : 의견서 1건 제출

- (안 제1조)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를 “문화예술관광 활동을 진작 및 진흥을 도모하고” 로, “순천문화재단” 을 “순천문화관광재단” 으로 한다.

의견 (반대)	관광 진흥 항목이 필요하면 순천문화재단의 사업 안에 추가해도 됨(수원, 전주 경우)
주무부서의 의견 (불수용)	순천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이나 팀에 관광을 포함시키는 게 아닌 문화와 관광을 동시에 아우르는 재단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가 공모사업 추진 및 관광 환경 변화, 다양성 증대에 대응하고자 함

- (안 제2조) 제2조제1항 중 “순천문화재단” 을 “순천문화관광재단” 으로 한다.

의견 (반대)	관광을 명칭에 대등하게 넣을 경우 관광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문화 예술의 영역을 위축 시킬 수 있음
주무부서의 의견 (불수용)	문화재단 기능 확대 시 기존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확대되지만 관광팀은 2개 팀만 구성되며 문화예술 기능은 확대되면서 관광기능이 추가되므로 순천문화관광재단 설립목적에 부합된 재단명 변경은 타당함

- (안 제3조)

9. 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구축, 관광 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10.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관광객 유치 마케팅

11. 지역 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평가

의견 (반대)	- 꼭 필요하다면 9는 가능 - 10번 반대, 관광과에서 가능함 - 11번 기획과 평가는 재단에서 운영은 관광과에서 분담
주무부서의 의견 (불수용)	기존 행정 주도로 추진하던 문화관광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주목적이기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하는 게 타당하며 다만 9호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추진’ 으로 개정하고 10호, 11호는 삭제하고자 함

- (안 제3조) 항목 추가

의견 (찬성)	도 단위,시와 군 단위 문화재단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데 순천문화재단에 빠져 있는 다음 항목 추가 “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과 연구, 보존과 육성”
주무부서의 의견 (수용)	지역 문화자원은 문화예술·관광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므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8. 12.(가족보육과-1957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8. 11.(기획예산실-10864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8. 11.(기획예산실-1086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2.(순천시 공고 제2022-1929호)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를 “문화예술·관광 활동을 진작 및 진흥을 도모하고”로, “순천문화재단”을 “순천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순천문화재단”을 “순천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예술”을 각각 “문화예술·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예술교류 및 문화예술단체”를 “예술·관광교류 및 유관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예술”을 각각 “문화예술·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사업”을 “사업 및 각종 공모 사업 추진”으로 하며,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제7호, 제8호,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과 및 연구 보존과 육성”로 신설하고, 제9호는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9호) 중 “문화예술”을 “문화예술·관광”으로 한다.

10.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추진

제4조제1항 중 “출연금”을 “출연금, 기부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상임이사” 를 “대표이사” 로, “15명” 을 “2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이사는” 을 “대표이사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임이사·이사” 를 “대표이사·이사” 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상임이사” 를 각각 “대표이사” 로 한다.

제11조 중 “출연금·보조금” 을 “출연금·보조금, 기부금” 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을 “(재단의 문화예술·관광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예술진흥사업” 을 “문화예술·관광진흥사업”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현재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2023년 7월 9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u>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u>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u>순천문화재단</u>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① <u>순천문화재단</u>(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생략)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u>문화예술</u>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문화예술</u>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2. (생략) 3. 국내외 문화 <u>예술교류</u> 및 문화 <u>예술단체</u> 지원 4. <u>문화예술</u>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u>문화예술</u>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u>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문화 예술 · 관광 활동을 진작 및 진흥을 도모하고</u> ----- <u>순천문화관광재단</u>----- ----- ----. 제2조(재단의 설립) ① <u>순천문화관광재단</u>-----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대상사업) ----- <u>문화예술 · 관광</u> ----- -----. 1. <u>문화예술 · 관광</u> ----- ----- 2. (현행과 같음) 3. ----- <u>예술 · 관광교류 및 유관단체</u> ----- 4. <u>문화예술 · 관광</u> ----- 5. <u>문화예술 · 관광</u> -----

<신 설>

6. 시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7. 재단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8. 국가·전라남도·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신 설>

9.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생 략)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6.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과 및 연구 보존과 육성

7. -----
-----.

8. -----

9. -----
----- 사업 및
각종 공모 사업 추진

10.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추진

11. ----- 문화예술·관광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
----- 출연금, 기부금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임원) ① ----- 대
표이사 ----- 20명 -----
-----.

② -----
- 대표이사는 -----

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③ (생략)

④ 그 밖에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표이사·이사 -----

-----.

제7조(임원의 직무) ① -----

----- 대표이사 -----
-----.

② 대표이사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재원 등) -----
----- 출연금·보조금, 기부금 -----
-----.

제16조(재단의 문화예술·관광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 -----
----- 문화예술·관광진흥사업 -----

-----.

②·③ (현행과 같음)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문화재단 기능 확대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순천문화재단의
운영과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7,200,000	2,500,000	3,000,000	3,400,000	3,900,000	4,400,000
세입(a)	-	-	-	-	-	-
세출(b)	17,200,000	2,500,000	3,000,000	3,400,000	3,900,000	4,400,000

※ 국·도비 공모사업 및 시 위탁사업은 미반영

※ 순천문화재단 출연금

(단위 : 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1,010,000	1,000,000	1,300,000	1,8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17,200,000	2,500,000	3,000,000	3,400,000	3,900,000	4,400,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7,200,000	2,500,000	3,000,000	3,400,000	3,900,000	4,40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17,200,000	2,500,000	3,000,000	3,400,000	3,900,000	4,400,000
인건비	6,750,000	1,050,000	1,200,000	1,350,000	1,500,000	1,650,000
운영비 등	3,155,000	455,00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사업비	7,295,000	995,000	1,200,000	1,400,000	1,700,000	2,000,000

※ (기존) 1국 4개팀 13명 ⇒ (변경) 1국 7개팀 22명

○ 인건비 산출내역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준용 <개정 2022. 1. 4.>

구분	산출내역	산출액
기본급	대표이사 • 일반직공무원 4급 10호봉 - 4,047,300원×12월=48,567,600원 - 제수당 연간 25,000,000원	73,567,600원
	사무국장 •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 - 3,659,700원×12월=43,914,600원 - 제수당 연간 19,500,000원	63,416,400원
	팀 장 • 일반직공무원 6급 10호봉 - 3,121,300원×12월×6명=224,733,600원 - 제수당 연간 18,000,000원×6명=108,000,000원	332,733,600원
	팀 원 • 일반직공무원 7급 10호봉 - 2,819,500원×12월×4명=135,336,000원 - 제수당 연간 16,000,000원×4명=64,000,000원	199,336,000원
		179,502,400원
		202,280,000원
제수당	- 정근수당(1, 7월/ 본봉 50%까지) - 가족수당 (배우자 포함 4인이내 / 100,000원×12월) - 정액급식비(월정액 140,000원 ×12월) - 시간외수당(직급별 초과근무수당 단가×30시간×12개월) - 연차수당(월봉금액 86%×1/30×5일) - 기술수당(30,000원×12월) - 파견수당(300,000원×12월×2명) - 월액여비(월정액 20,000원×7일)	

※ 순천시 파견 : 팀장 1명 / 주무관 1명

○ 운영비 등 산출내역

- 사무관리비 13,000,000원 × 12월 = 156,000,000원

□ 관련 법령

○ 지방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타지자체 현황

① 전주문화재단

○ 조직구성 : 대표이사 체제 ⇒ 1국 1관 10개팀 55명

- (사무국장) 경영지원팀, 미래전략팀, 문예진흥팀, 생활문화팀, 팔복기획운영팀, 예술놀이팀, 창작기획팀
- (한벽문화관장) 한벽운영팀, 콘텐츠사업팀, 브랜드공연팀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제안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관광거점도시 추진단 운영 : 관광거점정책팀, 관광거점콘텐츠팀, 글로벌마케팅팀

② 수원문화재단

○ 조직구성 : 대표이사 체제 ⇒ 2국 1센터 7부 21개팀

- (문화도시센터) 정책기획팀, 시민문화팀, 지역문화팀
- (관광국) 기획경영부(3팀), 문화재축제부(2팀), 관광사업부(4팀), 전통사업부(2팀)
- (문화국) 문화예술부(2팀), 공연부(3팀), 책문화부(3팀), 수원미디어센터(2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사업
3.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4. 문화예술단체의 국내·외 활동 지원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6. 수원화성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7.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8. 수원 SK아트리움 및 수원미디어센터의 운영·관리
9.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순천시립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5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개정이유

- 정신질환(장애)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 · 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 · 제한 및 실정법 위반

2. 주요내용

- 「순천시립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호

- (현행)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 (개정) 2.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립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6. ~ 9.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13.(가족보육과-1712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7. 12.(기획예산실-912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6.(순천시 공고 제2022-1886호)

순천시립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금지)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자</u>	<u><삭제></u>
3. ~ 5.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5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개정이유

- 낙안읍성과의 관람 연계성을 위한 관람시간 개정
- 정신질환(장애)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제한 및 실정법 위반
- 상위 법령 준수,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2. 주요내용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 (현행)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09:00 ~ 17:00
- (개정)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09:00 ~ 17:30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호

- (현행)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 (개정) 2. 삭제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제1항

- (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6. ~ 9.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13.(가족보육과-1712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7. 12.(기획예산실-912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6.(순천시 공고 제2022-1885호)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09:00 ~ 17:00” 를 “09:00 ~ 17:30” 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1조제1항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개관 및 휴관 등)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u>09:00 ~ 17:00</u> ② ~ ④ 생략	제6조(개관 및 휴관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u>09:00 ~ 17:30</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u>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 장애인</u> 3. ~ 6. (생략)	제11조 (관람의 금지)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2. ~ 5. (현행과 같음)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7명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략)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0명 이내의</u> 위원으로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75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지원 계획 수립 (안 제3조)
- 지원 대상 및 기간 (안 제4조)
- 업무의 위탁 (안 제5조)
- 중복지원 금지 (안 제6조)
- 지원 중지 (안 제7조)

2. 제정 조례안 : 별첨

3. 관련법령 : 해당 없음

4.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5.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 ~ 8. 22.)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7.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18.(가족보육과-1743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7. 7.(평생교육과-570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7. 12.(기획예산실-911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7. 29.(순천시 공고 제2022-1834호)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관련 조문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5조(업무의 위탁)
 - 제4조 : 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 : 시장은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을 추계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	220,000	44,000	44,000	44,000	44,000	44,000
국 비	—	—	—	—	—	—
도 비	70,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시 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220,000	44,000	44,000	44,000	44,000	44,000
국 비	—	—	—	—	—	—
도 비	70,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시 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백만원]

학자금 대출 현황(‘21년 말 기준)						연간 발생 이자 (㉠)	소요예산 (㉠ * 15%)		
계		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			계	도비 (30%)	시비 (70%)
인원	잔액	인원	잔액	인원	잔액				
3,828	14,811	2,959	12,521	869	2,290	296	44	14	30

- 취업 후 상환은 변동금리, 일반 상환은 고정금리 적용
- 전라남도 추진 사업으로 도비(30%), 시비(70%) 합산하여 사업 추진
- ※ 평균 신청률 15% 가정, 대출 금리 2.0% 가정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남현순 (☎ 6761)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김성찬 (☎ 6762)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45호
----------	--------

발의연월일 : 2022. 9. 13.

발의자 : 장경순 의원, 유승현 의원,
유영갑 의원, 박계수 의원,
이영란 의원, 이복남 의원,
김영진 의원, 정홍준 의원,
최현아 의원, 이향기 의원,
장경원 의원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시내버스 공적부담(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
 - (기존) 학생·청소년 → (확대) 학생·청소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라 등록된 자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법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중 “시내버스 학생·청소년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을 “시내버스 학생·청소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있음

- 시내버스 운임할인 대상에 노인과 장애인이 추가됨에 따른 추정 손실보전금.
단 시내버스 운임할인은 교통카드 사용 시 적용됨.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시내버스 이용 통계 자료 부존재

5. 작성자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내버스 학생 · 청소년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	2. 시내버스 학생 · 청소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참 고

관련 통계 및 법령 등

「순천시 인구 현황(8월 기준)」

○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 47,380명(남 20,492 여 26,888)

※ 순천시 전체 인구(281,918명)의 16.80%

○ 장애인 유형별, 장애정도별 등록 인구

장애유형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15,766	8,868	6,898	5,627	3,241	2,386	10,139	5,627	4,512
지체	7,434	4,181	3,253	1,249	797	452	6,185	3,384	2,801
시각	1,472	877	595	223	113	110	1,249	764	485
청각	2,319	1,179	1,140	568	280	288	1,751	899	852
언어	131	91	40	57	38	19	74	53	21
지적	1,322	777	545	1,322	777	545	0	0	0
뇌병변	1,480	804	676	882	447	435	598	357	241
자폐성	188	151	37	188	151	37	0	0	0
정신	640	334	306	637	332	305	3	2	1
신장	486	285	201	376	224	152	110	61	49
심장	28	15	13	24	11	13	4	4	0
호흡기	68	50	18	67	49	18	1	1	0
간	71	54	17	7	5	2	64	49	15
안면	12	7	5	7	4	3	5	3	2
장루·요루	63	36	27	4	4	0	59	32	27
뇌전증	52	27	25	16	9	7	36	18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국가 또는 시·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46호
----------	--------

발의연월일 : 2022. 9. 13.

발 의 자 : 정홍준 의원, 정광현 의원,
유영갑 의원, 박계수 의원,
유승현 의원, 장경순 의원,
이복남 의원, 신정란 의원,
김미연 의원, 김영진 의원,
최현아 의원, 이영란 의원,
이향기 의원, 최병배 의원,
장경원 의원

1. 제정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 2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8조)
- 주차구역 지정 및 설치 등 기타사항 (안 제9~14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첨부)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순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 사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주차구역 지정 및 설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운행구간 및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속도 최고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운행 지침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안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150,000	-	30,000	30,000	40,000	50,000
세입(a)	-	-	-	-	-	-
세출(b)	150,000	-	30,000	30,000	40,000	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시비	150,000	-	30,000	30,000	40,000	5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시비	150,000	-	30,000	30,000	40,000	50,000

○ 산출근거

【 주차공간 조성 】 20,000천원

▪ (시설비) 50개소 * 400천원 = 20,000천원

【 이용안전수칙 홍보활동 】 10,000천원

▪ (홍보활동) 2,000천원/회 * 5회 = 10,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정홍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4. 30.	
2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1. 8.	
3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3.	교통행정과
4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7. 8.	도시교통국
5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4.	도시교통과
6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3. 25.	안전도시국 교통과
7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6. 10.	도로과
8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2021. 2. 25.	
9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10.	교통행정과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2021. 6. 1.	안전총괄과
11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2. 23.	교통행정과
12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2. 30.	교통과
13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26.	안전생활국 교통행정과
14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3.	교통행정과
15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30.	도로과
16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21.	교통정책과
17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7. 2.	교통시설담당
18	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0. 16.	민원과
19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14.	교통과
20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2. 10.	교통정책과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8. 11.	교통행정과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2020. 6. 30.	교통과
23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2021. 2. 19.	
24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2020. 10. 19.	교통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7. 12.	교통행정과
26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19. 11. 6.	
27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2. 15.	교통행정과
28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5.	교통행정과
29	부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3. 31.	교통행정과
30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2020. 2. 7.	자동차관리계
31	부산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8. 17.	교통행정과
3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5. 20.	교통행정과
3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7.	교통행정과
3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7. 19.	교통행정과
35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1. 7.	교통정책과
36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2. 18.	교통행정과
3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0. 28.	교통행정과 보행자전거팀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7. 9.	교통행정과
3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13.	교통지도과
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2. 18.	교통행정과
41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1. 5.	교통행정과
4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2021. 5. 10.	교통행정과
4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2. 31.	교통행정과
4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25.	교통행정과
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7. 15.	교통행정과
46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2020. 7. 9.	교통행정과 보행자전거팀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47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1. 2.	주차지원과
48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5. 12.	친환경교통팀
49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5. 28.	철도과
50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9. 15.	교통행정과
51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0. 12. 31.	교통정책과
52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7. 8.	교통행정팀
53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8. 10.	도로과
54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 9. 29.	이모빌리티산업과
55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31.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56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8. 12.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
57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20. 7. 9.	교통기획과
58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30.	도로과
59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 12. 30.	
60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0. 12. 21.	교통정책과
61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0. 12. 24.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62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4. 9.	
63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9.	자전거정책과
64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2021. 5. 20.	교통정책과
65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4.	교통행정팀
66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2021. 5. 31.	교통행정과
67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2021. 6. 29.	미래도시국 건설교통과
68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	2020. 10. 12.	교통정책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69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4. 15.	건설도로과
70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2021. 6. 11.	교통정책과
71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생활교통과
72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19. 12. 31.	교통정책과
73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2020. 4. 1.	교통정책과
74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9. 29.	
75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3. 16.	건설과
76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5. 28.	도로관리과
77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2. 9.	교통지원과
78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2022.04.08	교통행정과
79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2.03.07	건설과
80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2.03.31	교통행정과
81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2022.04.29	녹색도시담당관
82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2.05.03	철도과
83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2.05.20	교통행정과
84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2.06.30	자전거정책과
85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2.08.08	전략교통과

참고 3

기타사항

□ 관내 대여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운영 대수	영업소 주소	운영 방식	안전모 구 비여부	보험 가입 여부
계	5	950				
1	지쿠테	300	남산로153-1	순천지점 운영	○	○
2	쌍쌍	50	조례못등길 55	순천지점 운영	X	○
3	디어	150			○	○
4	이브이패스	50	북문길 183	순천지점 운영	○	○
5	스윙	400	여수시 봉계 동	본사직영	X	○

□ 타 지자체 사례(주차공간) 및 우리 시 설치 예정지

○ 서울시 서초구 : 노면 표시형 주차구역 설치(2020. 2.)

○ 서울시 송파구 : 거치대형 주차구역 설치(2020. 10.)



노면표시형(서울 서초구)



거치대(서울 송파구)



온누리자전거 보관대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선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64호
----------	--------

발의연월일 : 2022. 9. 13.

발의자 : 서선란 의원, 김미연 의원,
이영란 의원, 유승현 의원,
이향기 의원, 최병배 의원,
정광현 의원, 김영진 의원,
이복남 의원, 오행숙 의원

1. 제정이유

-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숲길 지정관리(안 제4조)
- 숲길 실태조사 및 내용 (안 제5조 및 제6조)
- 편의시설 설치 및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안 제7조 및 제8조)
- 금지행위 및 홍보(안 제9조)
- 숲길 차마진입 제한(안 제10조)
- 숲길 협의매수(안 제11조)
- 홍보 및 포상(안 제12조 및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5조의 법인·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9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0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

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임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6조(숲길 실태조사 등),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12조(포상)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서선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8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7., 2011. 3. 9., 2011. 7. 14., 2015. 1. 20., 2018. 2. 21., 2022. 6. 10.>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21.>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본조신설 2011. 3. 9.]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등산·트레킹·산림레포츠·탐방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숲길에 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3. 숲길 조성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숲길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숲길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숲길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⑦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⑧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변경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본조신설 2011. 3. 9.]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타당성 평가의 절차,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전문개정 2011. 3. 9.]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본조신설 2011. 3. 9.]

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④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2020. 2. 18.> [제목개정 2011. 3.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9. 6., 2018. 8. 14., 2020. 6. 2.>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트레킹의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제목개정 2011. 9. 6.]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가평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3. 11. 15.	산림과
2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9. 24.	
3	고성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4. 10. 13.	녹지공원과
4	광주광역시 북구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9. 22.	공원녹지과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5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 및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안 제2조)
 - “주택법 제9조” → “주택법 제4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8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주택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7. 29. ~ 8. 1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21.(가족보육과-1774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7. 15.(기획예산실-926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7. 29.(순천시 공고-1776호)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 2.(생략) 3. “공동주택지”는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4. ~ 6.(생략) 7. “업무용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8.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 ----- ----- -----. 4. ~ 6.(현행과 같음) 7. ----- 관계법령에 따라 ----- ----- ----- ----. 8. (현행과 같음)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 ----- ----- 제5조에 따라 ----- ----- -----.
제8조(분양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6.(생략)	제8조(분양신청) 제4조에 따라 ----- ----- -----. 1. ~ 6.(현행과 같음)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 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6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개정이유

-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와 가구별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재원의 조성방법 개정(제5조제2항제2호)
 - 기존 :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액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개정 :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의 용도 개정(제6조제2항 각 호)
 - 제1호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경우” 삭제
 -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 제5호로 개정
 - 제3호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난방비에 대한 지원” 신설
 - 제4호 “가구별 생활복지 증진사업” 신설
- [별표 1] 주변지역 지원계획(제21조 관련)의 지원내용과 규모 개정
 - 기존 : 쓰레기 반입수수료 징수액 및 봉투판매액의 10% 지원, 매년 약 1억 5천만원 상당
 - 개정 : 반입되는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매년 지원(반입되는 폐기물량에 따라 변경)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6. ~ 9. 5.)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13.(가족보육과-1712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8. 1.(청소자원과-23064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7. 13.(기획예산실-918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6.(순천시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공고 제 2022-44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액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난방비에 대한 지원
4. 가구별 생활복지 증진사업

별표 1 주민지원기금 지원내용 중 “쓰레기 반입 수수료 징수액 및 봉투판매액의 10%지원”을 “반입되는 폐기물(종량제봉투)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주민지원기금 지원규모 중 “매년 약 1억 5천만원 상당”을 “매년 지원(반입되는 폐기물량에 따라 변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u>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액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u> 해당하는 금액 3. (이하 생략)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u> ————— 3. (이하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② (생략) 1. <u>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u> <u>채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경우</u> 2.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3.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u><신 설></u> <u><신 설></u> 4.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하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u>상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난방비에 대한 지원</u> 4. <u>가구별 생활복지 증진사업</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 주변지역 지원계획(제21조 관련)				[별표 1] 주변지역 지원계획(제21조 관련)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비고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비고
주민지원기금	출 연 금 지 원 50억원	•시설착공년도50%(25억) •사용개시년도50%(25억)		주민지원기금	출 연 금 지 원 50억원	•시설착공년도50%(25억) •사용개시년도50%(25억)	
	쓰레기 반입 수수료 및 봉투판매액의 10% 지원	매년 약 1억 5천만원 상당 •시설사용개시년도부터 •시설사용 종료 시까지 (주민지원협약체에 지원)			반입되는 폐기물 (중량제봉투)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매년 지원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따라 변경) •시설사용개시년도부터 •시설사용 종료 시까지 (주민지원협약체에 지원)	
	주민편익 시설 설치비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사용개시 전까지 설치			주민편익 시설 설치비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사용개시 전까지 설치	
지역개발 사업비	40억원	• 시설 착공 년도 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지원		지역개발 사업비	40억원	• 시설착공년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지원	
마을숙원 사업비	소요액	• 생활환경개선, 도로 개설, 상수도 설치 등 우선 지원		마을숙원 사업비	소요액	• 생활환경개선, 도로 개설, 상수도 설치 등 우선 지원	
주민유급 감시요원위촉	4명	• 시설 착공년도부터 시설사용 종료 시 까지		주민유급 감시요원위촉	4명	• 시설 착공년도부터 시설사용 종료 시 까지	
지역주민 우선채용	20명 이내	• 지역주민을 시설운영 요원으로 우선 채용 고용증대(단순노무직 등)		지역주민 우선채용	20명 이내	• 지역주민을 시설 운영 요원으로 우선채용 고용증대(단순노무직 등)	
입지지역 포상금	3천만원	• 최종입지확정 후 지급		입지지역 포상금	3천만원	• 최종입지확정 후 지급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대한 사업비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개정안 시행연도부터 주민지원사업의 종료시까지 함(2022년~)
- 세입은 전년도 순천시와 구례군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의 기금 전입금으로 함
-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소요 사업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299,580	△342,756	160,584	160,584	160,584	160,584
세입(a)	2,146,660	426,660	430,000	430,000	430,000	430,000
세출(b)	1,847,080	769,416	269,416	269,416	269,416	269,41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시 비	1,847,080	769,416	269,416	269,416	269,416	269,416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2년 ~
- 회계구분 :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146,660	426,660	430,000	430,000	430,000	430,000
봉투판매액(10%)	1,996,736	396,736	400,000	400,000	400,000	400,000
구례군 부담금	149,924	29,924	30,000	30,000	30,000	30,000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847,080	769,416	269,416	269,416	269,416	269,416
주민 지원 사업	협의체 운영비	587,080	117,416	117,416	117,416	117,416	117,416
	마을지원 사업비	1,260,000	652,000	152,000	152,000	152,000	152,000

○ 산출근거 세부내역(2022년 기준)

- | | |
|------------------------|--------------------------------|
| ▪ 주민지원협의체 인건비 | : 1,500,000원×2명×12개월= 36,000천원 |
| | : 1,700,000원×1명×12개월= 20,400천원 |
| | : 150,000원×2명×2회 = 600천원 |
| ▪ 주변영향지역 선진지 견학 | : 5,000,000원×1회 = 5,000천원 |
| ▪ 관내출장여비 | : 20,000원×5회×12개월 = 1,200천원 |
| ▪ 주민지원협의체 업무추진비 | : 8,000,000원×1식 = 8,000천원 |
| ▪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비 | : 183,333원×12명×12회 = 26,400천원 |
| ▪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 | : 125,000원×12명×2회 = 3,000천원 |
| ▪ 주민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 | : 5,816,000원×1식 = 5,816천원 |
| ▪ 주암면 유관단체 행사지원 | :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 ▪ 주민지원협의체 회원 복지비 | : 1,000,000원×1식 = 1,000천원 |
| ▪ 주변영향지역 12개 마을 지원 사업비 | : 652,000,000원×1식 = 652,000천원 |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 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장
자원시설관리팀장

조점수(☎ 749-6207)
정우창(☎ 749-6419)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76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제안이유

-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시설의 위치, 용어 정의에 관한사항(안 제1조 ~ 제3조)
- 시설의 기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운영시간, 휴관, 시설이용의 제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시설 예약, 체험료·재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 11조 ~ 제12조)
- 체험료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 편의시설 설치 · 체험강사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15조 ~ 제16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6. ~ 2022. 9.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7. 31.(산림과-14319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8. 1.(기획예산실-1019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2. 8. 9.(가족보육과-1933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1.(순천시 공고 제2022-191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192-11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지원센터” (이하 ‘센터’ 이라 한다)이란 목재문화체험·교육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재문화지원센터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공체험실
2. 목공기계실
3. 전시실
4. 유아놀이터
5. 그 밖에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6조(운영·관리 등) 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정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목재체험 프로그램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근무일지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 :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3. 다른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의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화재위험이 있거나, 위험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순천시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예약) 센터에서 운영하는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방문,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12조(체험료·재료비)

①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를 체험료와 별도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재료비는 제외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가 체험·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재료비는 제외한다.

1.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 (보호자 1명 포함)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4조(체험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하지 못한 경우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한다.

1.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체험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70 % 환급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휴게실(카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체험강사) 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공체험료 (제12조 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일 반	감경대상		
대품(점당)	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3,000원	개인체험료 30% 할인	개인체험료 30% 할인	※ 재료비 별도 부과
중품(점당)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	2,000원		“	
소품(점당)	목공품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	1,000원		“	

비고

1. 목공체험(대·중·소품)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체험 프로그램 외에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목재문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허함.
3. 체험 프로그램에 드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조례에 따른 다음의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체험료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서식1]

순천시 목재체험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번호	
성명 (단체명)		나이 (생년월일)	만세 (년월일)
소속		구분	개인() 단체()
참가인원	명	성별	남() 여()
E-mail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체험일자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시간)		
신청 프로그램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순천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

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				주무관		팀 장		과 장	
년 월 일(요일)									
근무자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근무인원	(목재교육전문가)			(목공체험지도사)			그 밖의 근무자		
징수현황	구 분	방문객 (입장객) 수		현금		카드		계	
	체험료 (재료비포함)	명		원		원		원	
		남	명						
		여	명						
특기사항	주요인사 방 문	단체 방문		행사		고 객 건의사항		방문(관람) 자 수	
								명	
시설점검사항	목공기계실	목공체험실		유아놀이터		자재보관동		그 밖의 시설	
특이사항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안 제6조(운영·관리 등)

- 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산림과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안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안 제16조(체험강사)

- 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6조(운영·관리 등) 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91	1	10	10	20	50
세입(a)	2,174	384	410	430	450	500
세출(b)	2,083	383	400	420	430	4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시 비	2,083	383	400	420	430	45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연간운영 비용 추정 : 382,800,000원

(단위 : 원)

구분	내용	산출내역	단가	인원 및 수량	합계
인건비	지도인력	1,832,000원×11개월	20,152,000	4명	80,608,000
	전문강사	1,600,000원×11개월	17,600,000	2명	35,200,000
	시설물 관리원	1,832,000원×11개월	20,152,000	1명	20,152,000
일반운영비	전기, 소방 등 시설 안전관리자 수수료 등	1,000,000원×12개월	12,000,000	1식	12,000,000
	홍보물품 · 소모품	800,000원×12개월	9,600,000	1식	9,600,000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2,520,000원×12개월	30,240,000	1식	30,240,000
	체험재료(목재 등)	10,000*19,500명	195,000,000	1식	195,000,000
예상 지출 총액					382,80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생태환경센터 산 림 과	과 장	김 회 만(☎ 749-8734)
	산림소득팀장	전 경 중(☎ 749-8751)
	담당자	최 지 혜(☎ 749-8752)

참고 1

관련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이란 별지 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말한다.
- ② 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에 배치하는 목재교육전문가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2

전국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현황

○ 전국 목재문화체험장 수

구분	합계	운영	조성		
			계	설계·공사	공사완료
개 소	59	38	21	19	2

– 대구(2), 인천, 대전, 경기(4), 강원(12), 충북(4), 충남(4), 전북(5), 전남(8), 경북(7), 경남(10), 제주

▪ 전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현황 : 59개소(운영 38개소, 조성 중 21개소)

– 운영방식 : 직영 33개소, 위탁 5개소

※ 김해(산림조합), 인제(영농조합법인), 충주(시설관리공단), 임실(한옥기술인협회), 거창(목재문화진흥회)

○ 전남권 조례제정 현황

시군(7개소)	조례명	제정일
광양시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17. 7. 5.
구례군	구례군 구례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18. 3. 26.
고흥군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2014.12. 30.
화순군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2019.12. 11.
장흥군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10. 5.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2.12. 31.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 9. 22.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8.10. 1.
영암군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014. 1. 2.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14. 1. 2.
목포시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21. 6. 7.

○ (전남권 8개소)운영현황

(단위 : 명 / 2021년 기준)

구분	시군	위치	개장년월	휴관일	운영인력
	7개소				직영
유인 중	광양시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991-3	2018. 05.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선거일	6명 (체험지도 4명)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 366-1	2018. 06.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선거일	3명 (체험지도 1명)
	고흥군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1296	2015. 01.	매주월요일, 1월1일 공휴일 다음날	4명 (체험지도 2명)
	화순군	화순군 남면 유마리 산10-5	2014. 01.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3명 (체험지도 1명)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80	2009. 07.	매주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6명 (체험지도 3명)
	영암군	영암군 군서면 상대포로 37	2015. 09.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2명 (체험지도 1명)
	목포시	목포시 죽교동 271-2	2021. 08.	매주 월요일, 1월1일, 5월1일 설날, 추석, 대체공휴일	6명 (체험지도 4명)

○ 전남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비교

시군	체험료(원)			
	구분	개인	단체	비고
광양시	대품(기계작업)	3,000 원	2,100 원	재료비 별도부과 인솔자 무료 입장
	중품(공구작업)	2,000 원	1,400 원	
	소품(단순작업)	1,000 원	700 원	
	놀이체험실	6,000 원	4,200 원	
구례군	대품(점당, 기계)	3,000 원	개인체험료의 30%할인	재료비 별도부담
	중품(점당, 공구)	2,000 원		
	소품(점당, 단순)	1,000 원		
고흥군	10,000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화순군	대품(점당, 기계)	2,000 원		재료비 별도부과
	중품(점당, 공구)	1,000 원		
	소품(점당, 단순)	500 원		
장흥군	만19세~64세	3,000 원	2,000 원	우드랜드 입장료 (단체20인이상)
	만13세~18세	2,000 원	1,500 원	
	만6세~12세	1,000 원	500 원	
	만65세 이상	면제		
	체험료 기본요	일반 장애인	5,000 원 2,000 원	실비 추가 징수
영암군	체험비, 자재비 등 실비 징수			
목포시	대품(점당, 기계)	3,000 원	2,100 원	재료비 별도부과
	중품(점당, 공구)	2,000 원	1,400 원	
	소품(점당, 단순)	1,000 원	700 원	
	유아목재놀이터	무료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6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9. 13.

1. 개정이유

- 관람차 이용료 ‘각종 행사 시 관람차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탄력적 운영코자 함 ※ 국가정원 관람료, 스카이큐브 이용료 동일 항목이 있음
-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 기능에 ‘잔디마당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삭제하여 국가정원 잔디마당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장 시설의 사용 제20조(관람차)
 - (③항 신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시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제4장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 제22조(설치및기능)
 - 5항 ‘잔디마당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6. ~ 9.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7. 29.(가족보육과-1837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8. 1.(기획예산실-1015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2.(순천시 공고 제2022-1848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시 관람차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 5. 잔디마당 승인에 관한 사항

제28조 3항 “제23조” 를 “제22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관람차) ①관람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신 설>	제20조(관람차) ①-----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시 관람차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잔디마당 승인에 관한 사항 6. 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제22조(설치 및 기능) ①-----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제28조(자문위원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③ 자문위원은 제23조에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자문위원 및 소위원회)①-----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2조에----- -----.